

[사 건 명] 행심 2017 - 75

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『특별교육 이수 등』 처분 취소 청구

□ 청구인 : ◇◇◇

□ 피청구인 : ◎◎중학교장

[주 문]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『서면사과, 접촉·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, 학교에서의 봉사 3일(1시간씩),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3시간』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.

[청구취지] 피청구인이 2017. 10. 30.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『특별교육 이수 등』 처분을 취소한다.

[재결이유]

## I. 사안의 개요

가. 청구인과 ○○○이 2017. 09. 08. 5교시 체육관에서 체육수업을 하면서 ■■■ 교복치마를 들어 올렸고, 평상시에도 종종 이러한 일이 있었다.

나. 2017. 1학기 중 청구인과 ○○○이 ■■■의 체육복 윗도리 및 책상에 ‘sex’ 라고 네임펜으로 여러군데 써 놓은 적이 있다.

다. 2017. 10. 13. 13시 전후 2학년 4반 교실에서 청구인이 ■■■에게 ‘사타구니가 성감대다’ 라고 이야기하고 창문 밖으로도 외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치마 주름이 뜯어지고 이에 ■■■에게 물어내라고 하였다.

라. 2017. 10. 30.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『서면사과, 접촉·협박 및 보복행위금지, 학교에서의 봉사5일(방과 후 1시간씩), 사회봉사 1회,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,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』 처분조치 하였다.

## II. 청구인의 주장

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한다.

가. 피청구인은 본 사건의 제대로 된 조사절차와 공정성을 무시하였고, 학폭위에서도 해당 학부모에게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묻지 않았으며 절차상 판단근거, 반론을 위한 근거자료 제시에 대해 설명 받지 못한 채 피해학생 ■■■의 주장만 받아들여 판단하였다.

나. ■■■이 본인의 치마를 들추고 장난하였다 하여 여자로 수치심을 느꼈다며 신고하였는데 이는 서로 같이 치마를 들추는 장난을 하였으며 학폭위에서 ■■■은 위 4명의 친구들에게 치마를 들춘 적이 없다는 거짓증언을 하였으며, ■■■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렸다는 2017. 09. 08. 5교시 체육시간에는 ■■■은 교복치마가 아닌 체육복을 입고 있었다.

다. ■■■을 포함한 친구들이 서로의 체육복에 작은 낙서놀이를 하였고, 책상에 낙서하고 지우기 놀이를 하면서 ‘SEX’가 아닌 ‘SEXY’라는 단어를 썼다 지운 것이고 이는 다른 친구들이 진술한 바 있다.

라. 청구인이 “■■■은 다리가 성감대다”라는 말을 하여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지만 청구인, ○○○, △△△, ■■■은 평소 친한 사이였으며 ■■■은 평소 성감대나, 성적인 발언, 야한 선정적 동영상 등을 먼저 공유하였고, 창문 밖으로 소리쳤을 때는 당시 창문은 닫혀 있었으며 그 전에 ■■■이 먼저 성감대 이야기를 꺼냈었다.

마. 피청구인측에게 잘못된 사안에 대해 수정 및 재검토를 의뢰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.

바.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의 반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이 사건의 내용 알려 ‘비밀누설금지’ 조항을 어기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하였다.

## II. 피청구인 주장

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가. 2017. 10. 18. 사안접수 후 사안조사를 위하여 청구인과 피해학생에

게 각각 자필 사실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았고, 공정성을 위하여 동일학급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의뢰하여 사실을 확인 한 바 있으며, 청구인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동일 횟수로 상담하였다. 또한, 학폭위 개최안내를 서면으로 송부하였다.

나. 청구인 상담 시 청구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였고 뒷받침 할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,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(SNS상 ■■■의 평소 성적인 발언)는 본 사건의 학폭위에서는 제출되지 않은 자료이다.

다. 2017. 09. 08. 5교시는 체육시간이 맞지만 ■■■은 교복을 입고 있었으며 이는 체육교사의 증언으로 확인하였고, 목격자 진술을 위한 설문조사는 공평한 증거 확보를 위한 방법이었다.

라. 2017년 1학기 중간 청구인은 ○○○과 함께 ■■■의 체육복 및 책상에 성적인 단어를 네임펜으로 쓴 사실을 자필확인서에 진술하였다.

마. 청구인이 창문 밖으로 ‘■■■이는 사타구니가 성감대다’ 라고 외친 것은 청구인이 자필 확인서에 진술하였으며 학폭위에도 참석하여 인정한 사실이고, 본교는 현재까지도 공사중이며 남성 인부들이 운동장과 교내외에 분포되어 있었다.

바. 청구인의 비밀누설금지 관련 주장은 본 건의 사안과는 별개이며 ‘비밀누설금지’ 조항은 ‘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’가

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관련 학생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다.

사. 학폭위 종료 후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심의 결과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잘못된 사안에 대한 수정과 재검토 의뢰는 학폭위 후에 제기된 것으로 서면으로 재심안내 및 불복절차 안내가 기재된 학폭위 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의뢰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.

아.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요소별 각 위원의 점수 산정에 의하여 이 사건을 처분하였다.

#### IV.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여부

##### 1. 관계법령

가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

나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

##### 2. 판단

가. 인정되는 기초사실

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, 보충서면, 각 제출된 증거,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

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청구인과 ○○○, ■■■은 ○○중학교 2학년 4반 학생들로, 1학기 때 부터 서로 성적인 대화, 농담, 사진, 동영상 등을 주고받기도 하고, 교복 치마를 들추는 장난을 친 적도 있는 등 서로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.

그러던 중 청구인과 ○○○은 낙서놀이를 하면서 ■■■ 몰래 ■■■의 체육복 윗도리와 ■■■의 책상에 싸인펜과 네임펜으로 ‘SEX’라는 단어를 여러군데 써 놓았고, ■■■이 이를 알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낙서를 하였으며, 2017. 09. 08. 5교시 체육시간에는 남자 체육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이 있는데도 ■■■의 교복 치마를 들추는 장난을 하였다.

또한 청구인은 2017. 10. 중순경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“■■■은 다리가 성감대다”라는 말을 크게 하였고, ■■■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청구인이 창문을 통해 교실 밖으로 소리를 쳐 ■■■이 하지 말라고 청구인을 잡아당기면서 청구인의 교복치마 주름이 뜯어지기도 하였다.

#### 나. 청구인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

피청구인은 2017. 10. 30.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청구인에게 『서면사과, 접촉·협박 및 보복행위금지, 학교에서의 봉사5일(방과 후 1시간씩), 사회봉사 1회,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,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』 처분조치를 하였는 바, 이러한 처분조

치가 적정한지 살피기로 한다.

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사절차와 공정성을 무시한 채 ■■■의 주장만 받아들여 판단하였고,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도 판단근거, 반론을 위한 근거자료 등에 대해 설명 받지 못했으며, 피청구인에게 잘못된 사안에 대해 수정 및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고, 같은 반 학생들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 ‘비밀누설금지’ 조항을 어기는 등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,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및 구술심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,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차 및 공정성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.

한편, 청구인은 ■■■의 치마를 들추는 장난을 하였지만 청구인 뿐만 아니라 ■■■도 평소 서로 같이 치마를 들추는 장난을 하였으므로 ■■■이 수치심을 느낀 것이 아니며, 청구인이 ■■■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렸다는 2017. 9. 8. 5교시 체육시간에는 ■■■이 교복치마가 아닌 체육복을 입고 있었으므로, ■■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, 피청구인이 제출한 2학년 4반 학생 대상 설문 결과와 ■■■의 진술서, 구술심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2017. 9. 8. 5교시 체육시간에 ■■■이 교복치마를 입고 있었는데, 청구인과 ○○○이 ■■■의 치마를 들추는 장난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청구인의 주장처럼 ■■■이 평소 청구인, ○○○ 등과 어울리면서 서로 치마를 들추는 장난을 한 적이 있다손 치더라도 2017. 9. 8. 5교시 체육시간의 경우 남자 체육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이 있는 자리인데도 청구인과 ○○○이 ■■■의 교복치마를 들춘 행위는 ■■■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추행으로 판단된다.

그리고 청구인은 ■■■을 포함한 친구들이 서로의 체육복과 책상에 낙서놀이를 하면서 ■■■의 체육복과 책상에 ‘SEX’가 아닌 ‘SEXY’라는 단어를 썼다가 지웠을 뿐이라고 주장하나, ‘SEXY’라는 단어 또한 성적인 단어임은 틀림없으며, 청구인은 성적인 단어를 체육복과 책상에 쓰는 등 낙서놀이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, 청구인과 ○○○에게는 단순한 낙서놀이였을 지 모르지만 ■■■은 이 사건 당시 청구인에게 낙서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점, 그럼에도 청구인은 ■■■ 몰래 ○○○과 함께 계속 체육복과 책상에 성적인 단어를 써놓은 점, ■■■이 청구인에게 책상에 적어놓은 낙서를 지우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우지 않아 결국 ■■■이 스스로 지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낙서놀이였다고 보기 어렵고, ■■■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괴롭힘으로 판단된다.

그리고 청구인이 “■■■은 다리가 성감대다”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청구인과 ■■■은 평소 친하게 지낸 사이로 ■■■이 성감대나, 성적인 발언, 야한 선정적 동영상을 먼저 공유하였고, ■■■이 먼저 성감대 이야기를 꺼냈다고 주장하나, 이 사건 당시 ■■■이 먼저 성감대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불분명한데, 설령 ■■■이 청구인과 평소 성적인 발언, 야한 선정적인 동영상을 먼저 공유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같은 반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점심시간에 큰소리로 “■■■은 사타구니가 성감대다.”라고 말했고, ■■■이 당황하여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교실 창문에 대고 재차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,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■■■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로 ■■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 할 것이다.

한편, 청구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



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같은 반 친구로서 1학기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 인 점, 청구인과 ■■■은 평소 서로 교복치마를 들추기도 하고, 성적인 대화나 동영상 등을 공유해 오기도 하였으며, ■■■이 먼저 성적인 말이나 동영상 등을 보내준 적도 있어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로 ■■■이 성적 수치심까지는 느끼지 않을 거라고 잘못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며, ■■■도 청구인과 성적 대화를 나누고 성적인 이미지, 성관계 동영상을 먼저 보내주는 등 ■■■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조치는 과중하다 할 것이다.

이에 『서면사과, 접촉·협박 및 보복행위금지, 학교에서의 봉사5일(방과 후 1시간씩), 사회봉사 1회,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,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』의 처분조치를 주문과 같이 『서면사과, 접촉·협박 및 보복행위금지, 학교에서의 봉사3일(방과 후 1시간씩),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3시간』으로 변경한다.

## V. 결어

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처분조치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.

